웹서버보안, 코드서명, 보안메일 인증서 발급 절차 가이드라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웹서버 보안, 코드서명, 보안메일 인증서 (이하 "인증서") 발급시 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이하 "인증기관등") 이 해당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지켜야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웹서버 보안 인증서"이라 함은 SSL(Secure Socket Layer)를 통해 전자 거래업체의 실존을 증명하여 가입자와 웹서버 간에 신뢰를 형성하고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암 * 복호화를 통해 보안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증서를 말한다.
 - 2. "코드서명 인증서"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전자서명을 추가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증서를 말한다.
 - 3. "보안메일 인증서"라 함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이메일에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통해 내용의 무결성, 송신자 인증, 기밀성 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증서를 말한다.
 - 4. "도메인등록확인서"라 함은 법률 제7142호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에서 명시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도메인 이름 및 등록인 등이 명시되어 있는 증서를 말한다.

②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 및 법인이 웹서버 보안, 코드서명, 보안메일에 사용하기 위한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신원확인 방법과 절차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인증서 발급신청자의 신원확인

- 제4조(웹서버 보안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 ①인증기관등은 웹서버 보안 인증서 발급 신청자에 대하여 직접대면을 통해 신원확인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호에 의한 신원확인증표
 - 2. 도메인등록확인서
 - 3. 도메인등록신청서 또는 등록비 납입 영수증
 - ②인증기관등은 제1항제2호의 도메인등록확인서에 기재된 도메인이 유효한지를 도메인 정보 검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도메인 등록인명이 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실명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도메인소유자의 서명이 포함된 도메인 사용에 대한 동의 문서 및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메인소유자의 신원확인증표를 확인하여 도메인 사용권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코드서명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 ①인증기관등은 코드서명 인증서 발급 신청자에 대하여 직접대면을 통해 신원확인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호에 의한 신원확인증표
 - 2. 도메인등록확인서
 - ②인증기관등은 제1항제2호의 도메인등록확인서에 기재된 도메인이 유 효한지를 도메인 정보 검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보안메일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 ①인증기관등은 보안메일 인증서 발급 신청자에 대하여 신원확인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호에 의한 신원확인증표
 - 2. 이메일주소
 - ②인증기관등은 제1항제2호의 이메일주소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온라인 인증서 발급 신청 정보 검증

- 제7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원확인) ①인증기관등이 제4조 내지 제6조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신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 하여야 한다.
 - 1. 개인의 경우
 - 가. 본인명의의 전화번호
 - 나.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호에 의한 신원확인증표 사본

- 2. 법인 및 단체의 경우
 - 가. 기관 대표 전화번호
 - 나. 서비스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호에 의한 신원확인증표 사본 ②인증기관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인증서 발급 신청자 전화번호를 제3의 전화번호 정보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확인하여 전화번호의 명의자와 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인증기관등은 인증서 발급 신청자 및 서비스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인증서 발급 신청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전화통화가 불 가능할 경우 온라인 인증서 발급 신청을 취소하고 대면확인을 실시하여 야 한다.

제4장 인증서 갱신・변경・재발급 절차

- 제8조(인증서 갱신·변경·재발급) ①인증기관등은 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인증서를 갱신·변경·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정 하는 신원확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인증기관등을 제1항의 갱신발급의 경우 당해 가입자에 한하여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할 수 있다.
 - ②웹서버 보안 인증서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추가적으로 인증서에 명시된 도메인이 유효성을 검증하여야 한다.